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. 12. 5 선고 2024가단2041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4.

판결 선고2024. 12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1. 2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권순향

별지